

##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규정

(폐지 2016.11.11.)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으로 하고, 위원은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09.3.1)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중앙도서관 운영 및 기본(발전)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개정 2009.3.1)
2. 자료의 폐기, 제적에 관한 사항(개정 2009.3.1)
3. 기타 중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(개정 2009.3.1)

제 4 조 (간사)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 5 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09.3.1)

【전문개정 2006.3.1.】

### 부 칙

본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폐지한다.